

개정 전	개정 후
<p>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p> <p>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u>반출한 날부터 3년간</u> 담배 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 수입업자에 대하여 <u>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u></p>	<p>----- ----- ----- -----.</p> <p>③ ----- ----- ----- ----- -- <u>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u> ----- <u>납세담보금액을 면제한다.</u></p>
<p><u>&lt;신 설&gt;</u></p>	<p>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p>